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칸서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 (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1년 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년 10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93조에 따른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호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4
1. 명칭.....4
2. 모집예정기간.....4
3. 모집(판매)예정금액.....4
4. 펀드존속기간.....4
5. 분류.....4
6. 집합투자업자.....4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5
1. 주요 투자대상.....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5
3. 수익구조.....7
4. 주요 투자위험.....7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8
6. 투자운용인력.....9
7. 투자실적 추이.....10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11
1. 수수료 및 보수.....11
2. 과세.....12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14
4. 전환절차 및 방법.....16
5. 분배.....17

Ⅳ. 요약 재무정보.....17

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명칭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93368)						
(종류) 클래스	A1 클래스	A2 클래스	A-H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D 클래스	C-W 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3369	93370	93371	93372	93373	93374	93375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칸서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이상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합니다.
2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초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을 말합니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비교지수 : KOSPI200주가지수*100%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합니다.

(3) 주식운용전략

- 펀드의 비교지수인 KOSPI200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KOSPI200 상장주식에 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별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고려하여 구성

※ 상기 주식운용전략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파생상품 운용전략

- 펀드는 파생상품을 수익자의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비교지수의 수익률 추종을 위한 투자비율 유지의 목적 및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주로 투자합니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는 주로 매매차익 추구 등 초과수익 확보를 위한 +α전략을 위해 투자합니다.

(5) 채권 및 유동성자산 운용전략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매수를 위한 현금성 자산으로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위험관리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유의사항

① 당해 펀드의 운용성과가 반드시 시장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개별위험	발행회사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주식가격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외화표시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부도위험	주식, 채권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

탁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종류	세부구분	주요내용
운용성향 위험	지수 추적오차 위험	KOSPI200주가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등으로 인해 KOSPI200 수익률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	투자원금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매월 분배에 따른 세금관련위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의 이연효과가 없어 복리운용의 효과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당해 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감소 위험	분배금 지급시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따라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이 투자원금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분배금 지급중단위험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수익증권보유좌수 및 평가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가지수 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또한 주식 및 주가지수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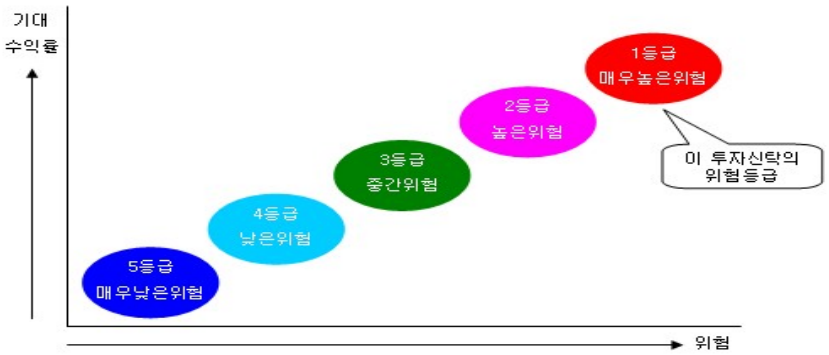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200 주가지수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KOSPI200)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주1)
1등급	초고위험	◦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Act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고위험	◦ 고위험자산 주2) 에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Passive형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BBB0/A3+ 이하 신용평가등급 편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저위험	◦ BBB+/A2- 이상 신용평가등급 편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초저위험	◦ MMF(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혹은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2) ◦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사채권,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Commodity 파생상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6. 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유승우	1962	주식·채권 운용본부장	11개	6,412억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5년7개월)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본부장(7년2개월)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2011.9월말 기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2010.10.01 ~ 2011.09.30	최근 2년 2009.10.01 ~ 2010.09.30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2009.04.07 ~ 2011.09.30
펀드전체	-3.88%	4.18%	-	-	15.65%
클래스 A1	-	-	-	-	-
클래스 A2	-3.80%	4.18%	-	-	17.37%
클래스 A-H	-	-	-	-	-
클래스 A-E	-	-	-	-	-
클래스 C	-4.55%	3.36%	-	-	14.71%
클래스 C-D	16.50%	14.77%	-	-	24.96%
클래스 C-W	-	-			-
비교지수	-5.16%	2.40%	-	-	13.39%

주1) 비교지수 : KOSPI수익률*95%+CD수익률*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미반영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4) 아래의 그래프는 개별 클래스가 아닌 펀드전체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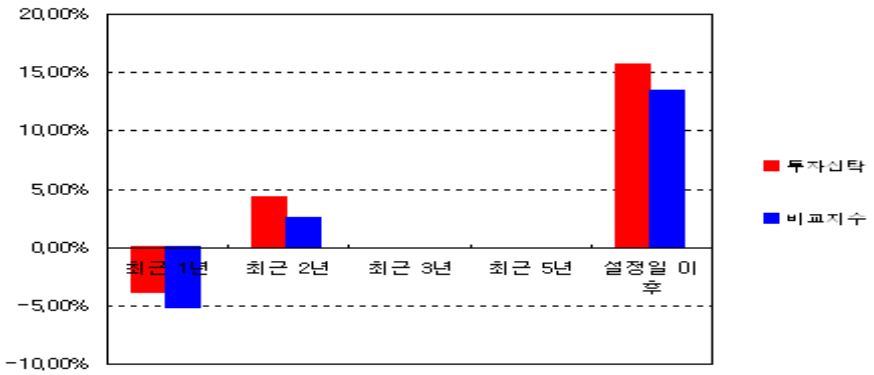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기간	최근 1년차 2010.10.01 ~ 2011.09.30	최근 2년차 2009.10.01 ~ 2010.09.30	최근 3년차 2009.04.07 ~ 2009.09.30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펀드전체	-3.88%	12.92%	-	-	-
클래스 A1	-	-	-	-	-
클래스 A2	-3.80%	12.82%	-	-	-
클래스 A-H	-	-	-	-	-
클래스 A-E	-	-	-	-	-
클래스 C	-4.55%	11.93%	-	-	-
클래스 C-D	16.50%	13.07%	-	-	-
클래스 C-W	-	-	-	-	-
비교지수	-5.16%	10.56%	-	-	-

주1) 비교지수 : KOSPI수익률*95%+CD수익률*5%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미반영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4) 아래의 그래프는 개별 클래스가 아닌 펀드전체의 실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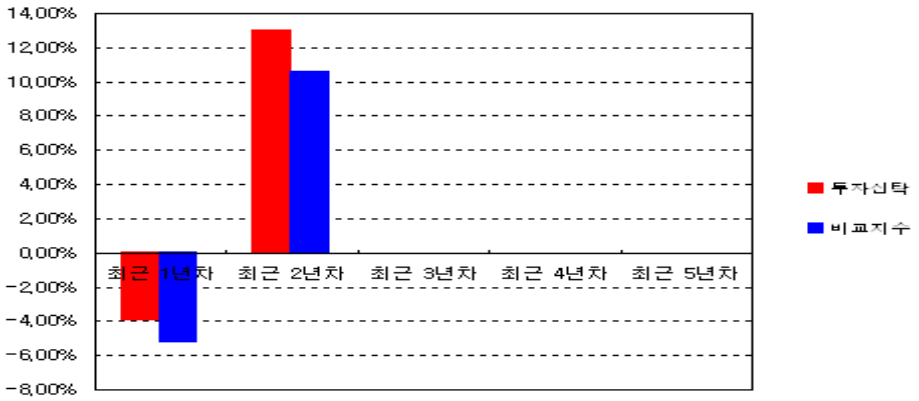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A1 클래스	A2 클래스	A-H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D 클래스	C-W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8% 이내	납입금액의 0.8% 이내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3% 이내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취판매수수료의 면제

신탁계약서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하여 매수된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1 클래스	A2 클래스	A-H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D 클래스	C-W 클래스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435%							매1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0.22%	연 0.22%	연 0.02%	연 0.10%	연1.00%	없음	없음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5%							
기타비용	연 0.020%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연 0.720%	연 0.720%	연 0.520%	연 0.600%	연 1.500%	연 0.500%	연 0.500%	-
증권 거래비용	-	0.131%	-	-	0.130%	0.093%	-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09.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1.09.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1 클래스	151	304	473	975
A2 클래스	151	304	473	975
A-H 클래스	150	259	379	737
A-E 클래스	89	217	357	775
C 클래스	152	478	838	1,908
C-D 클래스	49	155	272	619
C-W 클래스	49	155	272	619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가.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나.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대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대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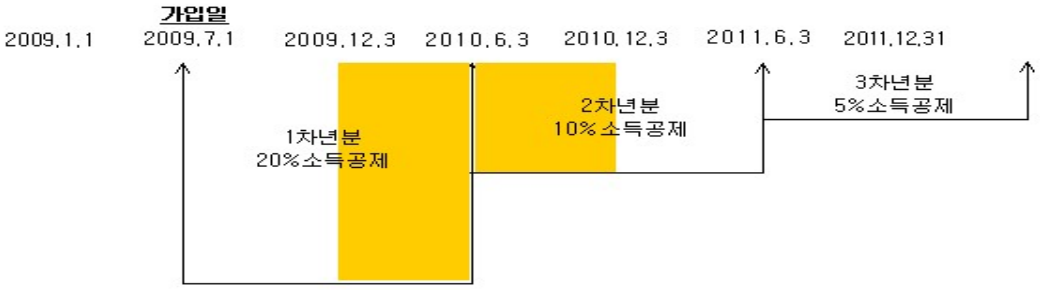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분배금이 지급되는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의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매일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적립식 클래스(C 클래스)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2.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월지급식 투자자
3. 임의식 클래스(A1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 투자자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A-H 클래스) 수익증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5. A-E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펀드계좌개설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6. C-D 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7. C-W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집합투자기구(신탁업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집합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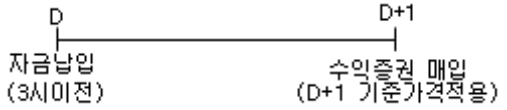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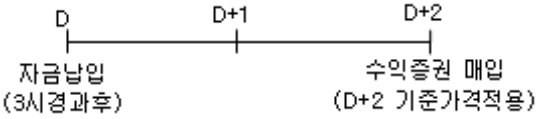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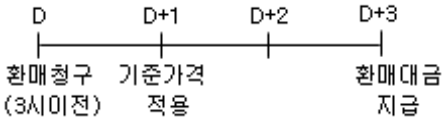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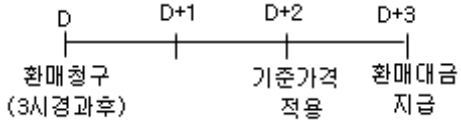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1)C 클래스 수익자는 신탁계약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에 C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하여 A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의 수익증권 전환에 있어 C 클래스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C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A2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5. 분배

역모기지론의 개념에 입각한 월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계약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원금의 감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요약재무정보	제 2 기 20110406	제 1 기 20100406
Ⅰ.운용자산	12,848,970,236	7,299,192,802
증권	11,370,813,150	6,204,221,700
현금 및 예치금	678,157,086	694,970,782
기타운용자산	800,000,000	400,000,320
II. 기타자산	770,028,426	87,335,504
자산총계	13,618,998,662	7,386,528,306
II. 기타부채	837,243,272	41,382,694
부채총계	837,243,272	41,382,694
I. 원본	10,124,927,456	5,636,402,506
II. 수익조정금	-65,717,846	-420,537,595
III. 이익잉여금	2,722,545,780	2,129,280,701
자본총계	12,781,755,390	7,345,145,612

손익계산서		
요약재무정보	제 2 기 20110406	제 1 기 20100406
Ⅰ. 운용수익	2,794,907,886	2,169,226,489
이자수익	52,635,492	30,806,387
배당수익	118,720,000	83,174,941
매매/평가차익(손)	2,611,250,626	2,054,285,577
기타이익	12,301,768	959,584
II. 운용비용	72,362,106	39,945,788
관련회사보수	69,793,016	38,600,288
기타비용	2,569,090	1,345,500
III. 당기 순이익	2,722,545,780	2,129,280,701
* 매매회전율	301	1,871
* 매매수수료	18,771,650	38,668,800